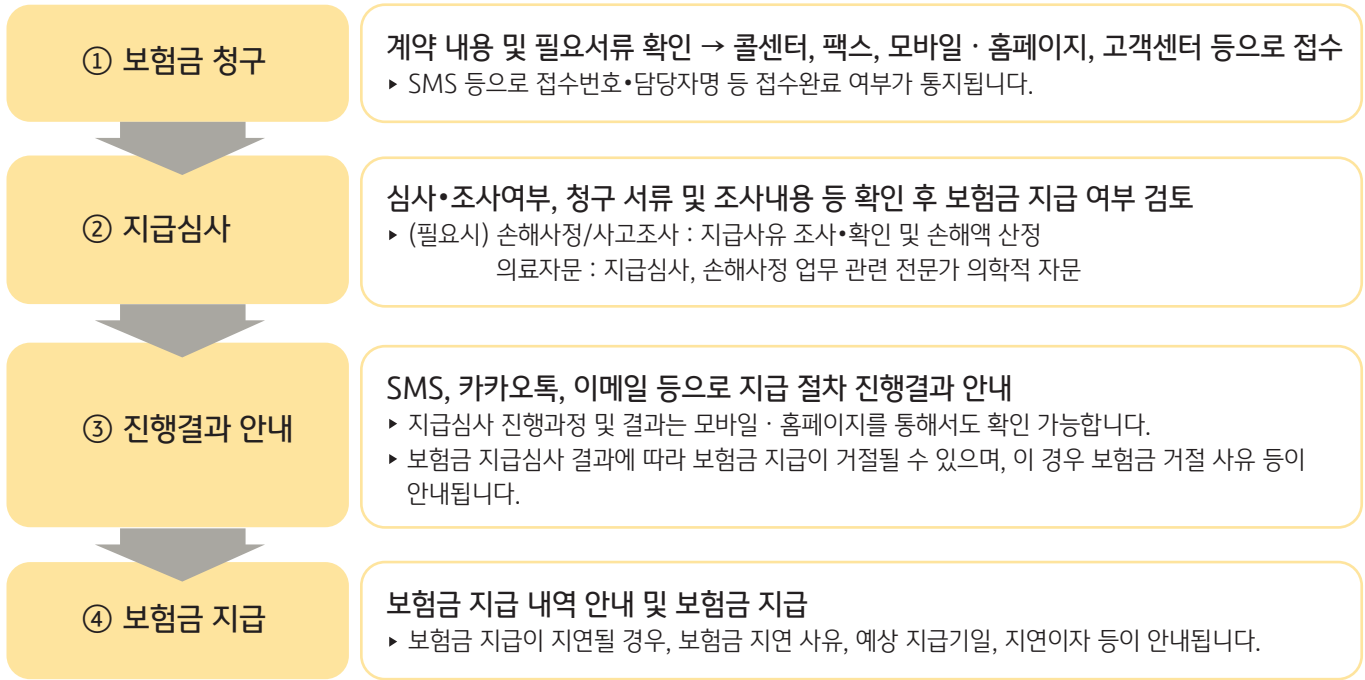


외국인 보험소비자 전용 안내장

보험금 청구·지급 단계



I.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



II.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

-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
→ 실손의료비 및 배상관련 보장 등의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이 있더라도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손해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.
- 소멸시효
→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.
- 손해사정 및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사항
→ 보험사고 청구시, 보험사고 종류에 따라 손해사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, '손해사정 대상' 청구 건에 대해서 보험 계약자 등은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합니다.

선임 대상	손해사정 대상 청구 건의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, 보험계약자 등은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가능 ▶ 3영업일 내 선임 여부를 보험회사에 회신(필요시 최대 10영업일로 연장 신청 가능)
비용 부담	▶ 보험회사 부담 : 선임요청에 동의하거나, 7일 이내 손해사정 미착수시 ▶ 보험계약자 부담 : 손해사정 결과에 불복하거나, 직접 선임하는 경우
미선임 시	미선임 시 보험사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손해사정을 수행

-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
→ 고의사고, 허위사고, 허위(과다) 입원·진단·장해, 사고 후 보험가입은 보험사기이며, 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, 「형법」에 따라 금지·처벌되는 범죄입니다.
→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,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세요.

- 상담·민원 및 분쟁조정
→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(민원)이 있는 경우, 아래의 연락처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구분	보험회사	금융감독원	생보협회
전화	 1588-3374	 1332	 02-2262-6565
인터넷			


III. 외국인 지원 제도

- 내보험 찾아줌
→ 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‘내보험 찾아줌’ 사이트에서 보험가입내역과 숨은보험금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지원언어	사이트
영어, 중국어	생보협회 cont.insure.or.kr

IV. [참고] 외국인 금융교육 자료

- 외국인 금융생활 가이드북
→ 보험·은행·카드 이용 및 금융사기 예방 등 한국 거주 외국인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돕기 위한 유용한 금융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.

가이드북 (PDF)		동영상	
영어·중국어·베트남어· 태국어·필리핀어·캄보디아어 ·러시아어·인도네시아어		영어·중국어· 베트남어·태국어	